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2195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정부제출(제220219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법률안별 검토	6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6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	8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안 제6조)	12

I. 정부제출(제2202195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7. 24.

다. 회 부 일 : 2024. 7.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

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II.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¹⁾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²⁾가 도입되며 법적으로 정의된 제한능력자를 일컬음.

이러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종전의 한정치산자와는 행위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로부터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1) 종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직무 수행능력을 활용하려는 취지임.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비교 】

구분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원칙적 취소 가능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 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그러나 종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다수의 개별 법률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도입 이후로도 용어만 대체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를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³⁾과 개개인의 구체적인 판단능력 및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후견 정도를

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366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한다.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를 가진 자가 특정 신분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략)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를 가진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서 배제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결정하고자 하는 한정후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제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사업등록, 위원·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사업등록 및 취소 기준, 위원회 위원 위·해촉 절차, 채용 및 계약 절차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한정후견제도가 도모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재산 등을 보호하고 고도의 전문성 또는 윤리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현황도 법률별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이하므로⁴⁾, 해당 법규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내용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 개정대상 법률별로 검토함.

4) 예를 들어, 전문자격사 중 회계사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각 전문자격사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포함 여부 사례]

구분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	○	○	X

2. 법률안별 검토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 6. (생략) ②·③ (생략)	제24조(사무직원) ① ----- ----- -----. -----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두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사무보조 외에도 감정평가 현장조사 업무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데, 2019년까지는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방지할 관리제도가 미흡하고 사무직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부실 및 허위 감정평가가 발생한다

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9년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사무직원 결격사유 규정이 마련됨⁵⁾.

동 결격사유는 당시 「변호사법」의 사무직원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조원 규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결격사유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자격에서 확일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사무직원과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타 전문자격사 보조자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현황 】

구분	변호사 사무직원	법무사 사무원	노무사 직무보조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X	X	○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감정평가법인등이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며, 채용계약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하여 사후 퇴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8

5) 법률 제16481호, 2019. 8. 20, 일부개정(2020. 2. 21. 시행)

나. 「건설산업기본법」(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생략)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안 제2조는 현행법 제9조⁶⁾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현행법 제54조⁷⁾에 따른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3조⁸⁾ 및 제55조의2제3항⁹⁾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건설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됨.

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하 생략)

9)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하 생략)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보지만¹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이는 지속적이지 않고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¹⁾.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과 같이 피한정후견인을 원천적·일률적으로 건설업 등록이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임명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결격사유 조항을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한정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10)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은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제1항).

※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禁治產者)와 비슷함.

11)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그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제4항).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產者)와 비슷함.

국토교통부도 피한정후견인의 건설업 및 건설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건설공사 계약 시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 수준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결격사유 발생 시 사후 퇴출 절차가 이미 마련¹²⁾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격사유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12) 「건설공제조합 정관」 제34조(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36조(운영위원의 해임)

- 결격사유 발생·발견 시 즉시 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되며, 조합원 1/5의 연서로 총회에 해임 요구가 가능하여 사후 퇴출 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36조(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등) 및 제38조(운영위원의 해임)

- 결격사유 발생·발견 시 즉시 운영위원 자격이 상실되며, 조합원 1/5의 연서로 총회에 해임 요구가 가능하여 사후 퇴출 가능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안 제6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¹³⁾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¹⁴⁾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임.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해임·해촉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먼저 검증절차의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지역·지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¹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명·위촉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현행법령에는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해임·해촉에 대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위원 해임·해촉 관련 유사 입법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16)에 따라 고시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의317)에서 민간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결격사유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7)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8호)

제3조의3(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